

# 심 사 보 고 서

2021년 9월 16일(목)  
행정기획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1. 8. 25. 오중균 의원 외 17명 발의(의안번호378호)
- 나. 회부일자: 2021. 8. 26.
- 다. 상정일자: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

【2021. 9. 8. 상정·의결 (원안가결)】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오중균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조례의 근거 법률인 「폐기물관리법」의 일부 개정 및 「지방자치법」 전편 개정, 「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 별표1 일부 개정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의 띄어쓰기 정비 등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에 따른 같은 법 제159조를 제176조로 변경 (안 제7조)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(안 제8조의2)
- 2016년 단체협약에 따른 “환경미화원”을 “공무원”으로 변경 (안 제8조제2항제5호, 안 제10조의2제4호)

- 1 -

- 「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에 따른 재활용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추가로 별표1 개정 (안 별표1)
- 대형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수수료가 2010년 개정 이후 정비가 없어 품목신설 및 가격조정 등 별표6 개정 (안 별표6)
-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을 적용하여 띄어쓰기 및 문구 등 정비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이병근)

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폐기물관리법」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으며,

「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재활용 별도배출 품목을 지정하여 품목조정 및 배출요령을 현행화를 도모하였으며,

무엇보다도, 2010년 개정 이후 정비가 없었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과 관련하여 새로운 품목을 신설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대형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없음」

## 5. 토론요지: 「없음」

## 6. 심사결과: 「원안가결」

## 7. 소수의견의 요지: 「없음」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

- 2 -